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경고·시정

제 목 예금계좌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금고운영,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구매카드 대금결제 등을 위하여 예금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하고,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립되지만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에 직접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

공적인 행정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 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부서의 승인을 받고 공문으로 금고에 요청하여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고,

자치단체는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좌 현황, 거래내역, 잔액 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해당 부서 보통예금계좌를 점검하고 그 결과 계좌가 불필요하거나 유사사업 등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즉시 계좌를 해지하거나 통·폐합 한 후 회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회계부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를 점검하여야 하고,

계좌의 보관은 실물통장, 통장직인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책임으로 비밀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관리·보관하되, 계좌 비밀번호는 주기적(연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하고,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원인행위)하며,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결정 및 지급(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 ○○○○)에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의 책임에 따라 보통계좌 비밀번호를 주기적(연 1회 이상) 변경하였어야 했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와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비교하여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어야 했으며, 오입금된 금액이 확인되면 즉시 반납조치하고, 유류카드 사용에 따른 유류포인트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었을 때에는 연 1회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금고로 세입조치 하였어야 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거래내역과 잔액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면밀히 점검하여 연체나 세입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였어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예금계좌관리 소홀

○○소방서(○○○○○○ 및 각 ○○○○)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에서 관리하는 계좌 4개는 2023년 및 2024년에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관리하였고, ○○·○○○○에서 관리하는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2024년에만 1번 변경하였으며, ○○·○○○○에서 관리하는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감사 대상 기간 중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방서(○○○○○○ 및 각 ○○○○)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카드대금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를 확인하여 대금결제일 전에 대금을 입금하여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했음에도 총 33회의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하여 0,000,000원에 대한 연체료 0,000원이 발생하였다.

#### 나. 유류카드 포인트 세입 미조치 및 오입금액 처리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유류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운영하면서 거래내역과 계좌잔액 등을 확인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함에도 2022. 5. 25. 유류카드 사용에 따른 유류포인트 000,000원과 2023. 5. 25. 유류카드 사용에 따른 유류포인트 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로 세입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2022. 11. 4. 소방차량 임대유류비 00,000원을 ○○소방서(○○○○○○)에서 납부하기 위하여 카드계좌에 입금한 후 2022. 11. 7. 소방본부에서 위 임대유류비 00,000원을 포함한 유류비 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 다. 일반지출 및 일상경비 지도·감독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일반회계 및 일상경비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음에도 위 지적사항과 같이 계좌의 보존관리(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소홀·카드대금 계좌 연체금 발생·유류포인트 세입 미조치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19. 7. 1.부터 2022. 1. 9.까지, 소방♡ ♡♡♡은 2022. 1. 10.부터 2023. 1. 1.까지, 소방♣ ♣♣♣은 2023. 1. 2.부터 2023. 5. 23.까지, 소방

◇ ◇◇◇◇는 2023. 5. 24.부터 2023. 7. 2.까지, 소방◎ ◎◎◎은 2023. 7.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는 2021. 1. 2.부터 2022. 1. 16.까지, 소방◇ ◇◇◇는 2022. 1. 17.부터 2024. 1. 2.까지, 소방㉠ ㉠㉠㉠는 2024. 1.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은 2022. 1. 17.부터 2023. 7. 9.까지, 소방☆ ☆☆☆는 2023. 7. 10.부터 2023. 11. 30.까지, 소방♡ ♡♡♡은 2023. 12.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업무 담당자로 예금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행위자들은 관서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도래 시 대금청구서와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비교 관리하지 않아 관서 예금계좌에 33번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2023년 발생한 유류포인트 0,000,000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았고, 소방차량 임대유류비 00,000원이 중복 입금되었음에도 반납조치 하지 않았으며, 매년 상·하반기 일반지출 및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조치하지 못하는 등 예금계좌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어 회계 관련 법령을 숙지하기 어려운 점, 관서 회계담당자는 계좌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지출·예산편성 및 배정·세외수입·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업무가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6.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가. [부서경고] 예금계좌 관리 업무 및 일반지출·일상경비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를 「부서경고」 처분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고,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시정] 유류카드 대금계좌에 보관되고 있는 유류카드 포인트(0,000,000원)와 소방차량 임대유류비 오입금액(00,000원)을 세입조치하시고, 아울러 예금계좌관리 운영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 시정·권고

제 목 소방차량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 필요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 1. 업무 개요

○○소방서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위하여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부터 감사 일 현재까지 화재 등 출동과 출동대기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래 [표1]과 같이 발생하였다.

[표 1]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계	현장 소방활동			기타
		화재	구조	구급	출동대기 등
교통사고 건수	33	9	2	14	8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sup>1)</sup>」 제3조·제4조·제17조·제18조·제42조에 따르면, “안전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현장대원사고 등”이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말하며, “현장 안전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기술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하고, 소방관서의 장은 이 훈령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거나 이 훈령을 준용하여야 하고,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의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별표 3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 및 유지하여야 하고,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세부기준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1)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분리하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의 업무를 전문화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2020. 1. 23. 제정함

그리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 지휘체계”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말하고, 재난 현장 표준작전절차는 소방청장이 다음 각 호<sup>2)</sup>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위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사용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운용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제원·성능 및 조작방법,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소방청에서는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개선계획<sup>3)</sup>을 시달하여 펌프·물탱크·구조·구급차 등 기본차량 및 화학·CAFS·조명배연차 등 전문차량과 소방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에 대하여 운용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고, 도 소방장비회계과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년도별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실시계획<sup>4)</sup>을 시달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관이 기본차량의

---

2) 1. 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0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2.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200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3.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300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4.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400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5.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500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6.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표준지침(SSG) 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3) 청 장비기획과-40(2020.01.06.)호 「2020년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개선계획 알림」

4) 도 소방장비회계과-813(2020.01.17.), -692(2021.01.13.), -2123(2022.02.11.), -2288(2023.02.10.), -3579(2024.03.04.)

운전과 기본조작이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운전미숙자나 사고자 등에 대하여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운전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현장 소방활동 시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SSG 5) 등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하여 활동하도록 관리·감독하였어야 했고,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에 대한 기본차량 운전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했으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교육이나 사례전과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했다.

한편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아래 [표2]와 같이 총 33건의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2024년 신입소방사 임용자 등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에 대하여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을 실시하였다.

[표 2]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합계)	화재출동	구조출동	구급출동	기타	비고
33	8	2	14	9	상대과실 1(기타1) 돌발강풍 4(화재1, 기타3)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2024년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실시현황

교육년도	계	교육대상자(사고자 포함)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24	32	0	2	1	29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소방차량 교통사고 재발방지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총 33건의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23. 6. 1. 차량점검을 위해 물탱크차량 틸팅 시 차량 내부에 있던 냉온장고가 낙하하여 전면유리가 파손되었고, 2023. 12. 7. 물탱크 차량이 후진주차 중 본서 보호틀과 접촉하여 파손되는 등 부주의로 인한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총 26건의 사고에 대하여 특별교육이나 사례전파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 나.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교육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2024년 기본차량 운전교육 관리 실태를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소방☆ ☆☆☆ 등 11명은 신입소방사로 최초 임용되어 2024년 기본차량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교육 수료<sup>5)</sup>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4년 교통사고 중 운전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자의 계급이 소방장 2명, 소방교 1명, 소방사 1명으로 임용 순서와 관계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자 소방◆◆◆◆ 등 4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 등 소방위 이하 현장대원에 대한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을 소홀히 하였다.

###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해당 없음

5) 1일 최대 20km로 한정하여 600km 도로주행 완료 시 자동으로 교육수료됨

## 6. 조치할 사항

### 가. ○○소방서장은

- ① [권고]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장 대원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은 안전사고 일지라도 정확한 사고경위 확인과 사례전파 등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시정] 기본차량 운전·조작훈련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소방♣ ♣♣♣ 등 11명에 대하여 교육을 수료할 수 있게 독려하시고, 사고 발생자임에도 교육 대상자에 누락된 소방♡ ♡♡♡ 등 4명에 대하여 교육대상자로 포함하여 교육을 수료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차량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경고·시정·통보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내 용

###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표 1] 다중이용업소 현황

2024. 11월 기준(휴폐업 제외)

합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일반/휴게	PC/게임	고시원	영화	기타
269	82	25	30	82 / 13	7 / 8	1	2	19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5조·제21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에이(A) 등급 이상인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자·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이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 중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는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에게는 신고 접수 시까지, 수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는 다중이용업주가 미성년·고령·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을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영업주가 동일한 건물에 있는 둘 이상의 영업장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업을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제9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이나 출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일시 및 장소와 교육 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사항 등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통지서는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의2·제11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과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매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대상자가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였어야 했고,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한편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방예방정보시스템<sup>6)</sup>(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보수교육 도래 대상자를 검색한 후 월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화 및 문자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통보하였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가 제출한 교육이수증 또는 시스템에서 전산 조회를 통해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 후 시스템에 갱신등록<sup>7)</sup>하는 방법으로 보수교육 업무를 처리하였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연간 교육계획 미수립

○○소방서(○○○○○○)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 전산 조회를 통해 교육 유효기간이 곧 도래되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검색한 후 월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 나. 보수교육 통보 소홀

보수교육을 위하여 시스템에서 교육 유효기간이 곧 도래되는 대상을 조회하는 경우 교육 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교육기준일자 등이 누락된 대상은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기간 중 시스템에서 ○○소방서의 “소방안전교육대상자 관리현황”을 추출한 바 아래 [표3]과 같이 종업원을 포함한 교육대상자 333명 중 28명의 교육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종료일이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6) 기존의 민원정보시스템을 2023. 12. 4.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 중앙시스템으로 전환 운영

7)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서 소방대상물관리-다중이용업 관리-소방안전교육대상자 관리 탭에서 대상 조회 후 교육 대상자 선택-사이버교육 탭에서 이수여부 조회 후 “저장”을 눌러 갱신등록 하여야 함 \*붙임 1 참조

[표 3] 다중이용업주 등 보수교육 대상 현황

2024. 11월 기준(휴폐업 제외)

교육대상자 전체 현황				교육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누락 현황			
합계	영업주	공동영업주	종업원	계	영업주	공동영업주	종업원
333	269	9	55	28	26	0	2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위 교육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종료일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28건에 대하여 그 사유를 확인한 바, 규칙 제5조제②항에 따라 영업주가 법인이거나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등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6건이었고, 붙임 1과 같은 방법으로 저장되지 않아 입력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이 16건이었으며, 그 밖에 성명 입력 시 띄어쓰기 등 입력을 잘못하였거나 교육이수 사항을 저장입력 하였음에도 교육기준일자 등이 누락되는 등 시스템오류로 추정되는 대상이 6건 확인되었다.

그리고 교육기준일자 등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28명에 대하여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 ○○○○ 등 5개소의 대상자는 법정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소방서(○○○○○)에서는 ○○ ○○○○ 등 5개소에 대한 교육 통보를 누락하였다.

####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는 2019. 7. 1.부터 2022. 1. 9.까지, 소방♡ ♡♡♡는 2022. 1. 10.부터 2022. 7. 3.까지, 소방♣ ♣♣♣은 2022. 7. 4.부터 2023. 8. 27.까지, 소방

◇ ◇◇◇◇은 2023. 8. 28.부터 2024. 1. 1.까지(업무대리), 소방◎ ◎◎◎은 2024. 1.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는 2021. 7. 5.부터 2022. 7. 10.과 2023. 7. 10.부터 2024. 7. 3.까지,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3. 7. 9.과 2024. 7.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으로, 소방㉠ ㉠ ㉠㉠은 2021. 1. 2.부터 2023. 7. 9.까지, 소방● ●●●은 2023. 7. 10.부터 2023. 9. 10.까지, 소방☆ ☆☆☆는 2023. 10. 1.부터 2024. 1. 2.까지, 소방♡ ♡♡♡은 2024. 1. 3.부터 2024. 7. 3.까지, 소방☼ ☼☼☼은 2024. 7.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무담당자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행위자들은 감사 대상 기간 중 규정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자 이력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자 발생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무자 등이 1년 내외 주기로 교체된 점, 2023. 12. 4. 민원정보시스템에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 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6. 조치할 사항

### 가. ○○소방서장은

- ① [부서경고] 연간교육계획 미수립과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자 이수이력 누락 등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서경고」 처분

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라며,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시정]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상의 교육대상자를 현행화하시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등에 대하여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본부장(○○○○○○)은

[통보] 보수교육 통보를 위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조회하는 경우 이수사항 미입력 등의 사유로 교육대상자 선정 및 통보가 누락되어 보수교육 미이수자 발생을 초래하게 된 사실이 종합감사 시 발견되었으니, 소방본부에서는 각 관서에서 연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대상자 이력관리를 통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상의 다중이용업소 현황과 교육대상자를 정기적으로 현행화시켜 교육대상자에 대한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통보 시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 이외에 이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집교육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